

농림축산식품부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이자 국고 미반환 및 시군 세입 미조치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함천군

내 용

경상남도 본청 및 시군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비의 정산 및 반환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자부담 조건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히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시군(보조사업자)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관광·향토자원개발 등 지역개발을 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 및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를 검정하여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생한 이자는 국고 반환 또는 시군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경상남도 의령군, 창녕군 등 5개 군에서는 2013~2015년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자의 증빙서류(정산서, 입출금통장내역 등)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였으나, 감사기간 중 증빙서류 등을 재확인 한 결과, [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발생이자 미반환 내역”과 같이 1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이자(42,435,900원)를 국고 반환(일반회계 19,980원) 및 시군 세입(지특회계 42,415,920원)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발생이자 미반환 내역

시·군	사업 연도	회계명	사업명	사업 대상자	사업 추진 현황			발생이자 (원)	미반환액 (원)
					보조금액 (천원)	보 조 금 교 부 일	사업 정 산 일		
합 계			11개 사업		8,040,792			42,435,928	42,435,900
의령군	2013	지특회계	소규모용수개발 (큰골지구)	의령 군수	1,050,000	14.26	14.2.28	3,118,710	3,118,710 (시군세입)
		지특회계	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기반확충)	의령군수	1,076,000	14.26	14.2.28	60,840	60,840 (시군세입)
		일반회계	한발대비용수 개발	의령 군수	70,000	13.12.31	14.2.28	19,980	19,980 (국고반환)
	2014	지특회계	소규모용수개발 (큰골지구)	의령 군수	1,050,000	14.26	15.2.28	1,398,680	1,398,680 (시군세입)
창녕군	2013	지특회계	농촌자원복합화산업화지원(농공단지)	창녕 군수	1,984,000	14.2.25	15.12.31	36,680,410	36,680,410 (시군세입)
고성군	2014	지특회계	고성쌀보리명품화	○○○○○ ○○○○○ ○○사업단	415,922	14.4.14 15.2.11	15.12.15	211,638	211,630 (시군세입)
	2015	지특회계	고사리건조저장시설	고성군 ○○조합	344,870	15.5.23	16.6.22	281,609	281,600 (시군세입)
산청군	2013	지특회계	산청친환경유기한우산업육성	○○○○○ ○○○○○ 사업단	700,000	13.3.27	14.6.24	228,003	228,000 (시군세입)

사.군	사업 연도	회 계 명	사업명	사업 대상자	사업 추진 현황			발생이자 (원)	미 반환액 (원)
					보조금액 (천원)	보조금 교부일	사업 정산일		
	2014	지특회계	산청친환경유기 한우산업육성	○○○○ ○○○○ 사업단	1,080,000	14.33	16.7.28	366,977	366,970 (시군세입)
	2015	지특회계	산청친환경유기 한우산업육성	○○○○ ○○○○ 사업단	110,000	15.2.9	16.7.25	46,651	46,650 (시군세입)
합천군	2014	지특회계	○○○○유통 센터지원	○○○○ 협회합천지 부	160,000	15.9.24	15.10.28	12,430	12,430 (시군세입)

* 미반납액 원단위 절사

조치할 사항 의령군수, 창녕군수, 고성군수, 산청군수, 합천군수는

[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재정산을 실시하고, 발생한 이자 42,435,900원중 국고 반환(일반회계 19,980원) 및 시군 세입(지특회계 42,415,920원)으로 조속히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이자는 국고 반환 및 시군 세입조치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